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5 발의연월일: 2021. 6. 24.

발 의 자: 한준호·홍성국·안민석

오영환 • 양이원영 • 기동민

노웅래 • 이용빈 • 김원이

변재일 · 송재호 · 임오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7월 1일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총 26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례는 2010년 총 69건에서 2019년 총 914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했고,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학대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

그런데 연구를 통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히 동물 대상 범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함.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동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 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제22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동물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관한 올바른이해증진과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물에 관한 교육(이하 "동물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교육관계자, 동물 관련 종사자, 동물 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전국적으로 추진
 - 2. 어린이가 동물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 자, 교육관계자 등의 적극적 참여로 추진
 - 3.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동물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
 - ③ 동물교육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동물교육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동물복지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복지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관한 을바른 이해증진과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물에 관한 교육(이하 "동물교육"이라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동물교육을 추진하여야한다. 1. 교육관계자, 동물 관련 중사자, 동물 관련 단체의 자발적참여와연대로 전국적으로추진 2. 어린이가 동물에 관하여을바르게 이해할수있도록부모,보호자,교육관계자등의적극적참여로추진 3. 동물과함께하는 다양한체험활동을통하여국민스스로동물을이해하고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추진

<신 설>

<신 설>

수립·시행 및 동물교육의 추 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동물복지주간) ① 국가 는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 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 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주간을 동물 복지주간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동물복지주간의 취지에 맞는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 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교육 또는 심 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